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17일(목) 오전 11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8층 은하수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1기(2021.1.1~2021.12.31)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허진구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 오동수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 양근식 선임의 건

제4-2호 : 감사위원 오동수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정원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100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19년 2월 12일 이사회에서 계속 시행함을 결의하였기에,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년 3월 7일 오전9시 ~ 2022년 3월 16일 오후5시

-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인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주총참석장

-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주총참석장

※ 문의처 : 재경팀 TEL (053)589-1692

9.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당사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회사 홈페이지(www.snstech.co.kr)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비대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체온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부득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유로 출입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하여 당사는 위임장을 비치하여 해당 주주께서 위임장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해 총회장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 비상사태 시 총회장 변경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총회장 폐쇄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변경 등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재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앤에스텍

대표이사 정 수 흥 (직인생략)

[별첨 1]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변경	비고
<p>제37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u>대표이사(사장)</u>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u>대표이사(사장)</u>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7조(이사의 직무) <u>사장</u>,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u>대표이사</u>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u>대표이사</u>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조문정비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u>감사에게</u>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u>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u>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p>제40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u>대표이사(사장)</u>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u>각 이사 및 감사에게</u>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생략) ④ <u>이사 및 감사 전원의</u>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⑥ (생략)</p>	<p>제40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u>대표이사</u>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u>각 이사에게</u>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u>이사 전원의</u>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p>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p>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u>이사 및 감사</u>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u>이사</u>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p>제46조(감사의 수)</p> <p>①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p> <p>②-③<신설></p>	<p>제46조(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p> <p>가) 감사위원회</p>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p>
<p>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p>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p>	<p>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p>

<p>하지 못한다.</p>	<p>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u>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u> <u>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48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u>① 제47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u></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p>
<p>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u>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u> <u>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 <u>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u> <u>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이사의 의무) 제3항 및 제39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u> <u>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 <u>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u></p>	<p>제49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u>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u> <u>②-⑦ <삭제></u></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p>

<p>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50조(감사록) <u>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u> <u>②-⑦<신설></u></p>	<p>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u>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u> <u>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 <u>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u> <u>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u> <u>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u> <u>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 <u>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p>
<p>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u>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u></p>	<p>제51조(감사록) <u>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u></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p>
<p>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u>① (생략)</u> <u>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u></p>	<p>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u>① (현행과 같음)</u> <u>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u></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p>

<p>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⑤ (생략)</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u>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u></p> <p>⑦-⑧ (생략)</p>	<p>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u>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u>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u></p> <p>⑦-⑧ (현행과 같음)</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별첨2] 제3호 의안 : 이사의 선임 건

(1) 사내이사 선임 세부내역 (재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허진구 (1968.07.10)	現 (주)에스앤에스텍 CFO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사외이사 선임 세부내역 (신규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오동수 (1962.01.24)	前 DGB 대구은행 부행장 前 대구테크노파크 센터장 現 평화산업(주) 감사위원 現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3]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세부내역(신규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양근식 (1955.08.01)	現 ㈜에스앤에스텍 사외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오동수 (1962.01.24)	前 DGB 대구은행 부행장 前 대구테크노파크 센터장 現 평화산업(주) 감사위원 現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4]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정원 선임의 건

(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정원 선임 세부내역 (신규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박정원 (1977.07.27)	前 삼성KPMG 회계사 前 대구시 결산검사위원 前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現 성문회계법인 회계사 現 대구지방국세청 공적심의회 심의위원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5] 제8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비고
제 5 조(임원의 퇴직금) 2. 직위별 퇴직금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1) 부사장 이하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2개월 분 (단, 2014년 1월 1일 이후 상무이사 및 이사직위로 입사, 승진하는 임원의 지급율은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1개월 분을 적용한다.) 2) 사장, 부회장, 회장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3개월 분 3) 감사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1개월 분	제 5 조(임원의 퇴직금) 2. 직위별 퇴직금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1) 부사장 미만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1개월 분 2) 사장, 부사장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2개월 분 3) 부회장, 회장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3개월 분 4) 감사 1년 근속에 평균임금의 1개월 분	임원 퇴직금 배수 변경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2년 3월 17일로부터 적용한다	